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연 근 해 어 업 의 구 조 개 선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 이유

법령에서 해수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행토록 하는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명확한 위임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근해어선 감척사업시 감정평가 시기를 지자체별로 이행, 같은 업종임에도 감정평가 단가·기관 등이 달라지는 문제 발생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 법적 권한의 위임(안 제10조제1항)

- 감척 신청의 접수, 선정 사실의 통지,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보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나. 근해어업 감정평가 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안 제10조제2항)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감정평가를 관리기관에서 수행토록 위탁 근거를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법제처 심사 과정 중 위임위탁 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추진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1호) 중 “따른”을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실태조사”를 “어업실태조사와 법 제18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용역조사·감정평가 의뢰 및 현장조사와 검증 등의”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감척 신청의 접수 및 선정 내용, 지원 내용, 어선·어구 감척 절차 등의 알림
2. 법 제12조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의 알림
3.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보
6. 법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10조(위임 및 위탁) ① ----- ----- ----- ----- -----.
<u><신 설></u>	1. 법 제11조에 따른 감척 신청의 접수 및 선정 내용, 지원 내용, 어선·어구 감척 절차 등의 알립
<u><신 설></u>	2. 법 제12조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의 알립
<u><신 설></u>	3.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u><신 설></u>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u><신 설></u>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보
<u><신 설></u>	6. 법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1. 법 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감정평가 의뢰 및 현장조사와 검증 등	7. -----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

2. ~ 4. (생략) ② 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u>어업실태조사</u>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8. ~ 10.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 ----- <u>어업실태조사</u> 와 법 제18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용역조사·감정평가 의뢰 및 <u>현장조사와 검증 등의</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17